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6. 11.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6월 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6년 6월 11일 제42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유재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가 건전하려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야 하는데, 이들이 건전생활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이미 법률에 정해진 지방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5076호 1995.12.29 공포)되어 청소년기본법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審查結果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년월일 : 1996. 6. 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관련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없음

### 4. 조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과 시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